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13 선고 2017가단9143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

피고A

변론 종결2018. 3. 23.

판결 선고2018. 4. 13.

주 문

1.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7,742,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6. 29.부터 2018. 4. 1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7,742,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6. 29.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C, D 차량에 관하여 E, F을 각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, B가 2017. 4. 20. 16:4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요금소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위 차량들을 뒤에서 들이받아 원고가 수리비로 같은 해 5. 11. E에게 30,830,000원을, 같은 해 6. 28. F에게 16,912,15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B가 2017. 8. 30. 사망하여 배우자로서 망 B를 단독상속한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2017느단870호로 망 B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, 그 신고가 같은 해 10. 17.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47,742,1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수리비 지급일 다음 날인 2017. 6. 29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. 4. 1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

판사박남천